Thermo Fisher Scientific Solutions LLC
써모피셔사이언티픽솔루션스 유한회사
11FL,12FL Suseo Office Building, 281 Gwangpyeong-ro
Gangnam-gu, Seoul, 06349, Korea
www.thermofisher.com

제　　목 : 유전자변형생물체 제품(LMO) 신고 프로세스 변경의 건

공문번호: 20220323C-01

발　　신 : 써모피셔사이언티픽솔루션스 유한회사

일　　시 : 2022 년 3 월 23 일

안녕하십니까?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2022 년에도 변함없이 저희 제품을 애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2022 년 4 월 1 일 부로** LMO 프로세스가 변동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법 제 9 조에 의거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제품(LMO) 신고 주체 변경 및 이행을 준수하기 위해 결정된 것이오니 귀사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변동 내용]

LMO 수입제도 운영체계 즉 신고 주체가 '써모피셔 사이언티픽 솔루션스 유한회사'에서 '최종 사용자(End User)'로 변경됨에 따라 최종 사용자 분께서는 LMO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LMO 제품에 대해 직접 수입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LMO 신고 수리가 완료된 후 LMO 정보시스템에서 '수입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후 당사로 전달해주시면 LMO 제품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지며, 신고에 필요한 활용계획서 일부 내용과 운반계획서는 별도로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써모피셔사이언티픽솔루션스 유한회사

변경되는 신고 프로세스 관련 FAQ

- **1번~9번까지는 이번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신고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며, 10번~25번까지는 자주하시는 질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 LMO 변경되는 신고 프로세스 안내

기존에는 수입대행기관, 즉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에서 고객 분들의 서류를 수령 받아 신고를 대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의 이행사항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어 수입 주체가 '써모피셔'가 아닌 '고객(End-User)'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에서는 2022 년 4 월 1 일부터 수입신고대행이 불가능하며, 고객 분께서 직접 LMO 를 신고하시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번거로우시겠지만 당사의 LMO 제품을 구입하시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LMO 정보시스템' 을 통하여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LMO 정보시스템' : https://www.lmosafety.or.kr/report)

1) LMO 시스템 회원 가입방법

- 회원 가입은 LMO 신고시스템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 접속 후 '신규 가입일 경우'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labs.go.kr/guide/viewPage.do?gT=memberIntergration)

- 가입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고 담당자의 경우 재직 증명서, 직위에 따라서 책임자 임명장 혹은 LMO 교육 이수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관 회원 가입 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경우 기관 담당자(043-240-6441)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참고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아이디 생성이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로그인이 완료되었으면 신고 사이트(https://www.lmosafety.or.kr/report)에 접속하신 후 서류 내용을 입력합니다. *활용계획서(특성) 부분과 *운반계획서 부분은 당사에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2) 제품 직접 구입 / 대리점을 통한 구입 시 신고 서류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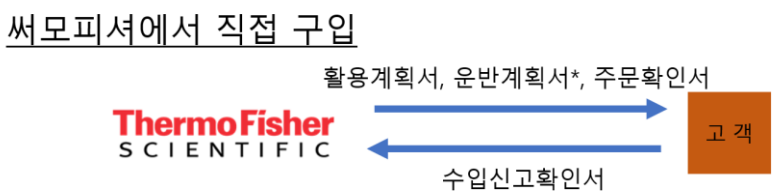

써모피셔에서 직접 구입하신 경우에는 전달받으신 활용계획서, 운반계획서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 내용 입력하시면 되고, 주문확인서 파일은 시스템에서 따로 첨부하셔서

신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추후 신고 수리가 되어 시스템 상 발급받으신 수입신고확인서를 써모피셔에 직접 전달해주시면 발주가 가능합니다.

대리점을 통한 구입

대리점을 통해 구입하신 경우에는 전달받으신 활용계획서, 운반계획서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 내용 입력하시면 되고, 대리점에서 수령 받으신 주문확인서 파일은 시스템에서 따로 첨부하셔서 신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 때, 써모피셔 주문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후 신고 수리가 되어 시스템 상 발급받으신 수입신고확인서를 써모피셔에 직접 전달해주시면 발주가 가능합니다.

3) 수입 신고 프로세스

*** LMO 제품은 수입 시 사전 신고가 원칙입니다.**

LMO 신고시스템을 통한 수입신고 진행 → **국가안전관리본부 신고 검토** → **신고 수리 완료 시 수입신고확인서 발급**

LMO 신고 시스템:
https://www.lmosafety.or.kr/report

신고 진행 상황은
LMO 신고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서류 보완이 없는 경우
기관 검토 기간은 평균 1 주일 소요
***신고 담당자 문의: 043-240-6438**

발급된 수입신고확인서는
당사로 전달 후 발주 가능/
발주 후 배송 기간은 평균 4~5 주 소요

2. LMO List 확인하는 방법

LMO List 는 http://www.thermofisher.com/LMO > 신고 제품 > 'LMO 신고 제품 리스트 다운로드'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ThermoFisher SCIENTIFIC

LMO Product Not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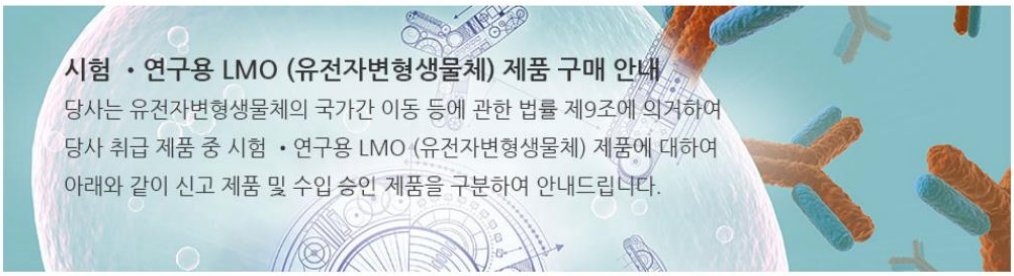

시험·연구용 LMO (유전자변형생물체) **신고** 제품

시험·연구용 LMO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승인 제품

↓

시험·연구용 LMO (유전자변형생물체) 신고 제품 안내

시험 · 연구용 LMO (유전자변형생물체) 신고 제품 주문 관련 공지 사항

당사는 다음의 LMO (유전자변형생물체)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LMO 신고 제품 리스트 다운로드)

*제품 리스트는 매달 업데이트되므로, 주기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주시기를 권장합니다.

'LMO 신고 제품 리스트'에는 제품 번호,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엑셀파일을 통하여 구매하시고자 하는 제품 확인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제품의 출시 혹은 새로운 브랜드 추가 시 수시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따라서 http://www.thermofisher.com/LMO 에서 LMO List 를 주기적으로 다운받으셔서 제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보통 1 달에 1 번 정도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3. LMO 신고 매뉴얼

기관에서 발행한 매뉴얼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발행물, 매뉴얼 모음 바로가기 (클릭)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FAQ & QnA 바로가기 (클릭)

-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과 함께 신고 시스템 개편 중으로 신고 가이드가 곧 업데이트될 예정이오니 수입 신고 시 참고 부탁 드립니다. (2022년 4월 중 예정)

4. LMO 수입 신고 세부항목

해당 신고 가이드는 2022 년 3 월 기준으로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따로 가이드에 나와있지 않거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기관 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043-240-6438)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1) 시설 검색 – 정보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담당자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043-240-6446, 6438)

2) 상세 내용

- 무역업 고유번호: 선택사항으로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기재 불필요
- 용도: 시험 연구용
- 수입국: 미국 (변동사항이 있거나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써모피셔에서 추후에 안내해드립니다.)
- 수입 수량: 기본적으로 EA 기준으로 작성되며, 제품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Vial 단위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 ➢ 다만 수입수량-단위 란에 EA 기준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일부 제품에 대해서 '비고'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전달 드리는 **활용계획서-"@비고 란에 기입 부탁 드립니다"** 를 참고하시어, 해당 내용을 **수입신고서-'비고'**란에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아래 제품은 활용계획서 상 '비고 란에 1EA=1Vial' 이 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 개를 주문하시고 수입 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수량에 3EA 기재하시고 비고 란에 추가로 '1EA=1Vial'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활용 계획서 예시]

시험· 연구용 (박람회· 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활용계획서

유전자변형생물체	보통명 Yeast (baker's yeast)	학명 *Saccharomyces cerevisiae*
	계통명 MaV203 (451103)	@비고 란에 기입 부탁 드립니다. 1EA=1Vial

ThermoFisher SCIENTIFIC

[수입신고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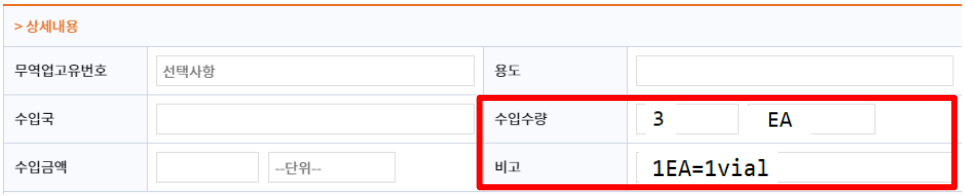

> 상세내용			
무역업고유번호	선택사항	용도	
수입국		수입수량	3 EA
수입금액	--단위--	비고	1EA=1vial

- 수입금액: 써모피셔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 써모피셔에서 구매한 가격, 대리점을 통해 구매한 경우 대리점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기재

3) 명칭

보통명 학명 계통명은 전달해드리는 '활용계획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4) 운반계획등록

운반계획은 당사에서 전달해드리는 운반계획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5) 활용계획 등록

활용계획은 당사에서 전달해드리는 활용계획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6) 사용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 **사용계획**

① 연구기간: 연구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임박할 경우 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연구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책임자 및 직위: 대학교의 경우 대학원생, 석사, 박사, Post-doc 학생 등이 아닌 교수님 등 실제로 연구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분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연구원이 아닌 정확한 명칭 즉 선임 연구원, 책임 연구원 등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③ 소속: 상위기관+부서로 기재 부탁드립니다. (예. O대학교 O과, O바이오 O팀)

- **안전관리계획**

① 연구시설 허가번호: 고객님의 연구시설 허가번호를 확인하여 기재 부탁드립니다. 만약 'LML'로 시작하는 연구시설번호가 아닌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구시설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확인서를 별도로 첨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② 안전관리등급: 연구시설 등급 기재 필요

③ 시설 내역: 일반/동물/식물/곤충/어류/대량배양/격리포장 중 허가 받은 시설내역으로 기재

필요

④ 사업자등록번호는 LMO 연구시설 등록/변경할 때 제출했던 가장 최근 번호로 기재가 되어야 하고, 어떠한 번호로 등록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신고담당자 분께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5. KIT 구성품일 경우 신고 유의사항

LMO List 에서 Kit 및 Kit 의 구성품 중 LMO 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LMO List 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품 수량'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LMO List 에 기재되어 있는 예시 품목들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Kit 내 1 개의 LMO 구성품이 있는 경우

제품번호	Description	구성품	Qty
A14697 (1 등급)	PCDNA 3.4 TOPO CLONING KIT	C404003 (1 등급)	1
K203040 (1 등급)	TA CLONING KIT TOP10F'	440300 (1 등급)	2

예를 들면 LMO List 에 기재되어 있는 A14697 제품을 1 개 구매하실 경우 구성품 C404003 1EA 에 대해 기재해 주셔야 하고, K203040 1 개 제품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구성품 440300 2EA 에 대해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즉 수량 기재는 Kit 인 A14697, K203040 기준이 아니라 구성품인 C404003, 440300 수량 기준으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2) Kit 내 여러 개의 LMO 구성품이 있는 경우

이 경우 각각의 LMO 구성품에 대해서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 A1373701 FREEDOM DG44 KIT를 발주하실 경우 작성법을 예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품번호	Description	구성품 1	Qty	구성품 2	Qty
A1373701	FREEDOM DG44 KIT	C404003	2	A1097101	1

- 수량 기재는 Kit 인 A1373701 기준이 아니라 구성품인 C404003 2EA 와 A1097101 1EA 수량 기준으로 기재해 주셔야 하고, C404003 과 A1097101 제품에 대해서 각각 수입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6. 1개 제품을 2번 신고해야 하는 품목 신고 시 유의 사항

제품번호	Description	구성품	Qty
A13285 (1 등급)	GENEART HO GEN ASSY SYS	A13308 (1 등급)	1
K171001 (1 등급)	#KIT,PICHIA EXPRESSION	450366 (1 등급)	1
K175001 (1 등급)	#MULTI-COPY PICHIA EXP KIT	450366 (1 등급)	1
K174001 (1 등급)	#EASYSELECT PICHIA EXP KIT	450372 (1 등급)	1
18312017 (1 등급)	ELECTROMAX DH12S COMP CELLS	18312017 (1 등급)	1

ThermoFisher SCIENTIFIC

해당 제품들은 제품 내에 2 가지 종(효모, 대장균)이 포함되어, 1 개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2 번 신고해야 하는 제품입니다.

이에 전달해드리는 활용계획서(특성)부분이 2 개 word 파일로 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2 번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 개의 수입신고확인서가 당사로 전달되어야 발주가 가능합니다.

7. LMO 제품이 입고되었으나 제품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불량품, 유통기한 등의 문제로 LMO 제품에 하자가 있어 재발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LMO 제품을 수입해야 하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재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에 신고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신고를 부탁드리며, 신고 수리가 된 후 수입신고확인서를 다시 전달해주시면 다시 발주가 진행됩니다. 기존 신고 건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신고 담당자 (043-240-6438)를 통해 신고 취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8. LMO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작성 방법

LMO 공동 연구로 연구책임자 소속기관과 연구시설의 소속기관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신고인은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기관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는 증빙 서류 (메일, 계약서 등)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GeneArt 제품일 경우

GeneArt 제품의 경우 일반 LMO 제품과 달리 Custom product 이므로, 신청하신 대장균 정보 등에 따라서 활용계획서(특성)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활용계획서(특성) 부분을 전달 드리는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상 개요서에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담당자와 확인 후 해당 내용 송부 드리겠습니다.

10. LMO 변경 신고

주문 수량보다 부족하게 입고되었거나, 일부 제품 주문 취소 등으로 신고 수량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기존 신고 내용과 변동된 부분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예시 : 수입금액, 수입국 오류, 연구내용 변경 등)

11. LMO 연구시설 등록 안내

LMO 제품은 허가 받은 LMO 연구시설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만약 LMO 연구시설이 없으신 경우에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를 통해 연구시설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연구시설은 LMO 신고 시스템 https://www.lmosafety.or.kr/report 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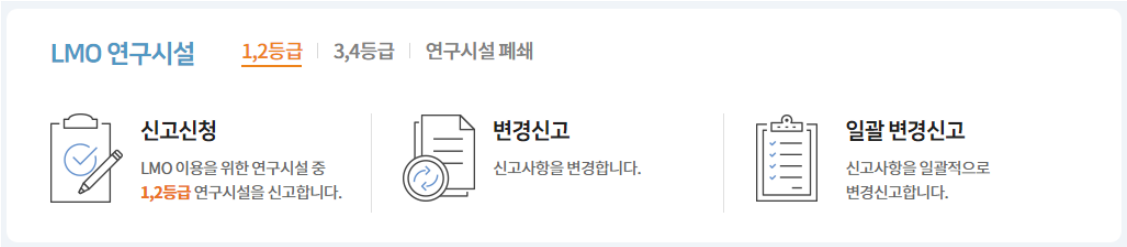

ThermoFisher SCIENTIFIC

12. LMO 연구시설 2등급일 경우 구매가능한 LMO 제품

LMO 1, 2 등급 모두 구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당사 LMO 제품은 모두 1, 2 등급입니다 (3, 4 등급은 없습니다.)

13. LMO 연구시설 1등급인 경우 구매가능한 LMO 제품

1 등급 연구시설인 경우 1 등급 제품은 구입이 가능하나 2 등급 제품은 구입이 어렵습니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를 통하여, 시설 등급을 상향하시거나 등록된 2 등급 연구시설은 없는지 확인하신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14. 293 Cell 구매 관련

293 Cell 의 경우 2 등급으로 분류되나 1 등급, 2 등급 연구시설에서 모두 구매 가능합니다. 다만 바이러스 생산, 바이러스를 세포에 감염시키는 연구, 이를 통한 Cell line 생산 제조 실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2 등급 시설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일반 단백질 발현 연구 등의 목적이면 1 등급 연구시설에서도 가능합니다.

15. LMO List 상 구매 불가능한 품목

LMO List 중 '구매가 불가능한 제품' 목록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VSV/VSV-G (Vesicular Stomatitis Virus)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BIS 통제 품목에 해당되며 미국 상무부에서 한국으로 수출 허가를 득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IS 모든 제품에 대한 international sales 는 중단된 상태로, 이에 고객 분께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16. 활용계획서 상 시설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시설 상세 내역 등) 확인하는 방법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신고 담당자 (043-240-6438)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17. 활용계획서 상 제품 정보를 기입하는 부분, 운반계획서, 주문확인서에서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활용계획서 상 특성, 운반계획서, 주문확인서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내용과 함께 당사로 문의주시면 확인해보고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 주문 후 수령 받기까지 소요시간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해외 본사 재고 있을 경우 약 4~5주가 소요됩니다. (LMO 수입신고 확인서 발부기간 약 1주 + 수입발주 약 3~4주)

19.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LMO 여부

제품의 LMO 여부 및 근거가 궁금하신 경우 써모피셔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확인 후 안내 드리겠습니다.

20. LMO로 판단되는데 LMO List에는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써모피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LMO 여부 확인 후 안내 드리겠습니다.

21. 하나의 주문 건에 여러 개의 LMO 제품이 있을 경우

제품 별로 LMO 제품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총 1개가 아닌 각각 신고가 필요합니다

22. 대리점의 LMO 관리대장 작성 여부

LMO 제품이 거쳐가는 모든 경로(대리점)에 대하여 LMO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23. 써모피셔 출발지점 연구시설번호 (LMO 관리대장 작성 관련)

써모피셔 LMO 제품은 장지동 물류센터에서 고객 혹은 대리점으로 배송이 됩니다.

당사는 수입대행기관으로 분류되는 바, 장지동 물류센터는 LMO 연구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LMO 관리대장 작성 시 연구시설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출발지점을 장지동 물류센터 (수입대행기관)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24. LMO 법 조항 및 벌칙 과태료 안내

법적사항	관련법조항	미준수 시 제재사항
LMO 연구시설 신고	LMO 법 제 22 조제 1 항	**유전자변형생물체(LMO)법 제 41 조(벌칙)**
LMO 수입 신고	LMO 법 제 9 조제 1 항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LMO 연구시설 변경신고	LMO 법 제 22 조제 3 항	**유전자변형생물체(LMO)법 제 44 조(과태료)**
LMO 연구시설 폐쇄신고	LMO 법 제 22 조제 4 항	*1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LMO 수입변경 신고	LMO 법 제 9 조제 2 항	

25. 시험 연구용 LMO 관리 부서 및 문의 사항 연락처

시험 연구용 LMO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LMO 서류를 작성하시면서 어려움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하단 정보 참조 부탁 드립니다.

1) LMO 정보 시스템: https://www.lmosafety.or.kr/mps > Q & A 문의
2) LMO 신고 담당자: 043-240-6438
3) LMO 연구시설 담당자: 043-240-6446

ThermoFisher SCIENTIFIC

[별첨]

1. 첨부 1 -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
2. 첨부 2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계획서]
3. 첨부 3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활용계획서]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9. 11.>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

[ ] 시험·연구용 [ ] 박람회·전시회용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상호	무역업 고유번호 제 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팩스번호
	사업장 주소	

수입신고내용

명칭			용도	수입국	수입 수량	수입 금액	비고
보통명	학명	계통명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처장) 귀하

첨부서류	1.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주문서 사본 1부 2.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획서 1부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사용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서류 1부 4. 박람회·전시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 출품계획서 1부
작성방법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표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적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험·연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람회·전시회용	농림·축산용	농림축산식품부
	산업용	산업통상자원부
	보건의료용	보건복지부
	환경정화용	환경부
	해양용	해양수산부
	식품·의료기기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확인	→	기안 및 결재	→	확인서 발급
신고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210㎜× 297㎜(백상지 80g/㎡)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2-1호서식]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계획서

수입자	상호	책임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수출자	상호	책임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유전자변형생물체	보통명	학명	계통명
	수입수량		
운송회사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운송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운송경로	출발지	도착지	
	경유지		
운송형태 및 방법			
표시 및 포장방법			

210㎜×297㎜[백상지 80g/㎡]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2-6호서식]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활용계획서

유전자변형생물체	보통명	학명
	계통명	수입수량

특성	유전자변형에 사용된 현대생명공학기술 및 새롭게 부여된 특성
	단백성 독소[1] 생산 여부
	약제내성 유전자 도입[2] 여부 및 명칭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미생물[3] 이용 여부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별표2-1]에 해당하는 독소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별표2-2]에 해당하는 약제내성 유전자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별표2-3]에 해당하는 병원성미생물

사용계획*	과제명	
	연구기간 . . . ~ . . .	
	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소속	직위

안전관리계획	연구시설 허가번호(신고확인번호)	안전관리등급 BL(Biosafety Level) -	시설내역
	취급·보관 방법 및 주의사항		

비고	* 사용계획란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 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